

#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 심 사 보 고 서

2004. 6. 18.  
행정위원회

## 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년 6월 10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2004년 6월 16일 회부
- 다. 상 정 일 자 : 제104회(임사회) 제1차 위원회(2004년 6월 17일) 상정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정진)

### 가. 개정이유

- 참여정부의 국정이념인 「변화와 혁신」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선도 조직이 필요함에 따라 혁신분권담당기구를 설치하여 혁신·분권·균형발전 3대 과제 추진에 따른 필요 인력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 승인이 있어 우리 구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골자

- 제2조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,271명에서 1,274명으로 변경  
- 집행기관의 정원 : 1,246명에서 1,249명으로 변경

### 다. 참고사항

-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-993(2004.5.14.)호 및 서울시 조직담당관-3276(2004.5.18.)호 혁신분권담당기구 정원승인 이첩통보

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박창수)

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및 정부혁신 등 국정목표의 지방적 구현과 각 기관간 유기적인 지원, 협력추진체제를 구축하고 혁신분권 관련 업무를 총괄 및 지원하며 자율과 분권의 시대에 맞게 자체 혁신과제를 발굴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0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4. 6. 10.  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자치단체 지방분권을 위한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혁신분권담당기구를 설치하여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정부혁신 등 국정목표의 지방적 구현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충원할 수 있는 정원 승인이 있어 정원 총수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제2조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,271명에서 1,274명으로 변경  
 1. 집행기관의 정원 : 1,246명에서 1,249명으로 변경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근거 :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-993(2004.5.14.)호 및 서울시 조직담당관-3276(2004.5.18.)호 혁신분권담당기구 정원 승인 이첩통보와 관련임.  
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  
 다. 합의사항 : 합의되었음

따로붙임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**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**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지방공무원의 총수 “1,271명”을 “1,274명”으로 하고 동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 : 1,249명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시 증원되는 3명(집행기관의 정원 3명)에 대하여는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
**신·구조문 대비표**

=====

현 행	개 정 (안)
제2조(정원의 총수) 영등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,271명으로 하고,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 1. 집행기관의 정원 : 1,246명 2. 생 략	제2조(정원의 총수) 영등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,274명으로 하고,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 1. 집행기관의 정원 : 1,249명 2. 현행과 같음